

2009. 10. 28(수) 10:00

제162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본회의

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
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

심 사 보 고 서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
조례안 2
2.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
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 5

[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05. 14.

나. 제 출 자 : 안철우 의원 외 1명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0. 21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9 - 23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산림에 인접된 논·밭두렁 등에서 영농부산물의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산림에 인접된 논·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제반시책 마련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산림에 인접된 논·밭두렁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
- 산림에 인접된 논·밭두렁 등에서의 가연성잡초 등은 모두 베기로 제거토록 하고, 산불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을 선정 시상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불법 논·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(안 제8조, 제9조) 「자연환경보전법」의 전면개정 시행('06.1.1)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(안 제1조,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산림에 인접한 토지 등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금지 등 제반시책 마련과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, 안 제4조에서는 논·밭두렁 등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산불예방 등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을 선정 시상 및 보조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불법 논·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음.

-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겨울철 산불 취약기를 맞이하여 사전에 충분한 계도 및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9. 10. 8.

나. 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0. 21(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 : 제2009 - 39호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

차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,
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안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거창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곳에 밤샘주차 등 위반 시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별표 2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계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